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0일, 정을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5.1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을호의원)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재
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음.

학교민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 대응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할청의 조직·인력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현행은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이 2025.6.21.부터 시행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안에 규정된 ① ‘학교민원의 정의’ 부분(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6조 신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과 중복여부 및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른 ‘교육활동’의 범주와 비교하여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② 학교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안 제35조제2항 신설)은 학교민원 제기자에 보호자 뿐 아니라 학생도 포함되므로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의 학생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③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및 조직·인력 확보(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는 학교의 민원대응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조하고 조직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해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기구의 명칭을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④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관련 조치 및 지원(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학교민원을 제기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조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⑤ 학교민원 필요 사항을 위임한 안 제35조제5항은 교육감에 대한 위임 조항을 특정하여 명시하거나 위임 대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훈의원, 신정훈의원, 백승아의원, 김준혁의원, 정성국의원, 정을호의원, 진선미의원, 서영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